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 3. 14.(목)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유상용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4년 3월 4일
- 회부일자: 2024년 3월 6일

3. 제안 이유

- 「지방보조금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로 지방보조금 관리·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 (위원회 구성)
 -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목적 추가(안 제9조제1항)
 - 2) 당연직 위원 임명 대상 공무원 직위 확대(안 제9조제4항)
 - ※ (현행조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
 - ※ 「지방보조금법」 에 따른 공무원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만 의미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초과 불가
- (위원회의 운영) 상위법에 따른 용어 명확화(안 제12조)

○ (위원회 회의)

- 1) 위원회 대리 출석 조항 삭제(안 제13조제3항)
- 2) 서면 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안 제13조제4항)

< 조례 간 서면 심의 가능 사유 비교 >

구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면 심의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해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회의록) 회의록 기재사항(일시, 장소, 참석 위원 성명 등) 구체적 명시(안 제17조제1호~제4호)

5.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성 및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¹⁾제6항에 따라 제5항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을

1)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명확하게 세분화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등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을 두어 「지방보조금법(약칭)」과 상충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상위법과 합치하여 교육감이 공무원 위원을 임명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는 지난 2023. 12. 21. 일부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의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한 것임.
-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맞추어 위원회의 위원 대리 출석 조항을 삭제하고, 서면심의 사유를 변경하는 것임.
- 안 제17조는 회의록 기재사항에 일시, 장소, 참석 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인용 조문·용어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사항을 보완, 수정하는 등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4.][중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3. 10. 4.>]